

## 평생교육원 운영규칙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원은 루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“본원”)이라 칭한다.

**제2조(설립목적)**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치)** 본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82번길 20 루터대학교 (캠퍼스)내에 둔다.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원장)**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(2016.2.29.개정)

② 원장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(2016.2.29.개정)

**제5조(교직원)**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토록 한다.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구성)**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**제7조(임기)**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(2016.2.29.삭제)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9조(의결)**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4 장 설치과정

**제10조(학습기간)**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**제11조(학습일수)**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12조(지원자격)**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3조(선발방법)**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4조(설치과정 등)**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<별지 1>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.

② 제1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학습비)**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6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**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 <별지 2>을 교부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**제17조(자치회)**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**제18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**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(2016.2.29.개정)

**제19조(포상)**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

상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회 계

**제20조(회계년도)** 본원 회계년도는 루터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**제21조(예산편성)** 본교의 예·결산 규정에 따라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(2016.2.29.개정)

**제22조(수입원)**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총당한다.

1. 학습비
2. 루터대학(교)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4. 기타 수입

**제23조(회계집행)**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주무부처에서 관리한다. (2016.2.29.개정)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2>

## 편성표

(루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)

설치과정명	세부과정명	정원	학습대상	교과목	학점 ( )	학습기간 (주)	관련학과
	영어회화	180	일반 성인	영어회화 초급 (Level 1)	3 (45)	1학기 (15)	신 학 과
				영어회화 초급 (Level 2)	3 (45)		
				영어회화 초급 (Level 3)	3 (45)		
				영어회화 중급 (Level 1)	3 (45)		
				영어회화 중급 (Level 2)	3 (45)		
				영어회화 중급 (Level 3)	3 (45)		
				영어회화 고급 (Level 1)	3 (45)		
				영어회화 고급 (Level 2)	3 (45)		
				영어회화 고급 (Level 3)	3 (45)		
<b>계</b>	<b>1개 세부과정</b>	<b>180명</b>		<b>9과목</b>	<b>27(405)</b>		
교양과정	베델성서	45	일반 성인	신앙편	2(30)	1학기 (15)	신 학 과
				성서편	2(30)		
				생활편	2(30)		
<b>소 계</b>	<b>2개 세부과정</b>	<b>45명</b>		<b>3과목</b>	<b>6(90)</b>		
예체능과정	성악과정	15	일반 성인	성악과정	2(30)	1학기 (15)	신 학 과
<b>소 계</b>	<b>1개 세부과정</b>	<b>15명</b>		<b>1과목</b>	<b>2(30)</b>		
<b>합 계 (2개과정)</b>	<b>3개 세부과정</b>	<b>240명</b>		<b>13과목</b>	<b>35(525)</b>		

<별지 3>

제 ○ ○ - ○ ○ ○ ○ 호

수 료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   년   월   일

사람은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

○○○과정 (○학점)  
○○○과정 (○학점)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

년   월   일

루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○ ○ 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루터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인)